



본란의 기사는 미국내 통상자문회사인 Manchester Trad社의 통상보고서 및 EC주재 변호사의 보고서를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本會 國際部 (TEL : 553-0941/7)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미 노동·산업 연맹, CTV의 반덤핑 명령의 우회를 주장하며 미상무부에 제소 계획

COMPACT (Committee to Preserve American Color Television)라 불리는 노동·산업 연맹 (labor-industry coalition)은 보도에 의하면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한국의 CPT 업체가 멕시코에서의 TV 조립 생산방법을 통해 반덤핑 명령을 우회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하여 미 상무부에 調査要請하였음.

우회 덤핑방지 조사는 1988년 미 중합무역법 781조에 따라 미상무부가 착수할 수 있는데, 동법은 미결 상태의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의 우회를 방지 혹은 이의 사정을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미 상무부에 부여하고 있음.

본 우회덤핑 방지 조사는 이른바 제3국내에서 완제품화 혹은 조립생산을 통해 AD 명령을 모면하는 4가지 우회덤핑 형태중 2번째 형에 따라 착수되는 것임.

(나머지 우회덤핑의 3가지 형태는 미국내에서 완제품화 혹은 조립생산, 제품의 사소한 변형, AD 조사후 제품개발임.)

기본적으로, 미 상무부는 브라운관에 대하여 기존의 AD 관세부와 명령범위내의 제품(본 케이스에서는 덤핑판정을 받은 국가의 브라운관이 멕시코산 CTV 제품에 포함됨.)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미 상무부가 조사개시를 결정하기 위하여 긍정적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판

정해야 함.

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TV 세트가 미국내 AD 판정에 해당되는 同形의 브라운관을 이용, 멕시코내에서 완제품화 혹은 조립 생산됨.

② 완제품의 TV 가격과 덤핑 혐의의 브라운관의 가격의 차가 작음.

③ 멕시코의 TV 제조 업체 혹은 수출 업체가 브라운관 AD 명령에 적용되는 제조업체 혹은 수출업체와 관련있음.

④ 덤핑판정을 받은 국가의 브라운관이 멕시코로 수출되고 있다는 무역형태의 증명.

⑤ 미국내 덤핑판정 이후 미국향 TV 조립을 위해 멕시코내의 덤핑 해당국의 브라운관 수입의 증가

관련법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조사 개시 판정전에 ITC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음.

본 케이스는 기존의 AD 관세부와 명령에 해당되는 품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해판정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추측됨.

그러나 ITC가 우회 덤핑에 관한 판정이 “상당한 피해를 주는 사안”이라고 확신하면, 새로운 조치로 최초의 긍정 피해 판정과의 불일치 여부에 대한 서면 권고서(written advice)를 제출할 수 있음.

ITC의 서면 권고서는 미 상무부의 조사 의사 표시 통보 60일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상무부의 조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음.

표면상으로는, 한국의 업체들이 COMPACT 제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

로 보임.

CPT에 대한 낮은 덤핑 마진율로 미 상무부는 멕시코로부터 반입되는 한국산 TV에 대하여 무협의 덤핑 혹은 de minimis (0.5%) 덤핑 판정을 내릴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下院 에너지·무역 위원회 의장인 John Dingell (民) 하원 의원은 미 상무부가 미 통상법 781조를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 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음.

Dingell 하원 의원은 본 법과 기타 미국의 통상법을 적극 시행치 않고 있는 미 행정부를 비난하고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반덤핑법을 약화시키려는 조치에도 반대하고 있음.

로버트 모스베커 미 상무장관에 보낸 서한에서 Dingell 하원의원은 “덤핑으로 인해 국내의 CTV 산업보다 더 피해를 본 산업은 없다”고 언급. 일본 제조업체들은 일본의 국내시장을 보호하고 미국시장에서 덤핑 행위를 함으로서 전자산업을 부흥시켰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모든 CTV 제조업체들은 해외로 밀려나가거나 또는 도산한 상태이나 CPT는 실질적으로 미국 제품으로 남아 있다고 언급.

Dingell 하원 의원은 멕시코로부터의 미국 내 CPT 수입은 과거 2년동안 134% 증가하였는데, 이는 “현재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브라운관과 TV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를 명백히 회피하고 있는 아시아의 CTV 제조업체 때문이라고” 주장함.

Dingell 의원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급증은 반덤핑 관세부와 명령이 해당제품에 내려진 “직후”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개별 케이스에 대한 상무부의 판정을 미리 단정치 않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며 상무부가 “법의 취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엄격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음.

본 케이스와 Digell 의원의 서한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 상무부에 논란 많은 1988 우회 덤핑 방지 규정을 실행토록 압력을 행사함과 아울러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시킬 의도로 보임.

COMPACT와 기타 업체들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제출한 미국의 반덤핑법 개정안은 현행 미국법보다 약화된 것으로 보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은 또한 미국의 협상 대표들에게 제3국이 멕시코로부터의 자유로운 미국내 수입으로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곧 있을 멕시코-미국 자유무역 협정 협상에서 원산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토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임.

## 2. 미·일 양국, 통신시장 개방에 최종합의

8월 1일 일본은 미국 업체에 대한 자국의 통신시장 개방 조치 시행에 동의. 이번 시장 개방 협정은 모든 현행 및 향후 고도의 통신 서비스와 디지털 통신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음.

통신기기에 관해 일본은 1990년 3월 30일 공약한 네트워크 채널 터미널 장비(NCTE) 시장 개방을 시행키로 합의하였으며 이로써 컴퓨터와 디지털 전화 시스템과의 상호 작동이 가능케 됨.

본 협정에 따라 일본 소비자들은 제조업체 혹은 유통업체로부터 직접 NCTE를 구매할 수 있음. 이전에는 고객들은 단지 일본 업체들로부터 거의 독점으로 구입한 일본의 운송 업체로부터의 장비 임차만이 가능하였음.

소식통에 의하면 일본 NCTE 시장에서 잠재적인 미국 기업의 점유 가능금액을 연간 최소 1억 5,000불로 못박았다고 함.

일본은 또한 음성우편(voice mail)과 일렉트로닉 뱅킹과 같은 고도의 통신 서비스의 시장을 개방키로 약속.

이 시장은 매년 7억불씩 증대할 것으로 추산되며, 향후 5년간에 걸쳐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일본이 동의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① 미국 기업의 진출을 용이케 하기 위한 허가절차의 간소화와 명확화
- ② 일본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미국 기업들은 규제 절차 없이 일반고객 및 공급 업체에 사기업 통신 서비스(Corporate Communications)를 제공할 수 있음.

③ 통신부문에서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세이프 가드 조치시행. 세부적으로, 일본의 주요 운송업자들은 더이상 국제 통신 시설의 임차 목적으로 20%까지 Surcharge를 부과할 수 없음.

칼라힐즈 USTR 대표는 일본의 통신제도는 "실제로 규제되어 있으나" 이번 협정은 일본 업체의 미국내 시장점유와 같은 정도의 미국 업체의 일본 시장 진출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조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언급.

### 3. 미국·EC, 전자제품 생산협력 추구

8월 3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의하면 EC와 미국은 지난 7월 부뤼셀에서 반도체, 컴퓨터, 기타 정보기술의 양상에 관한 기존의 연구 프로그램 조정을 포함한 전자연구부문의 협력 확대에 관해 협의를 개시하였음. 본 협의는 궁극적으로 양국 정부의 전자 연구 프로그램에서 업체와 학계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본 협의는 유럽내에서 일본 전자 업체들이 계속 성공하고 있고, 유럽의 컴퓨터와 반도체 업체 감소에 대한 EC의 대응조치로 볼 수 있음.

부시 행정부는 이번달 연구 종료후 본 협의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 분명함.

검토중에 있는 특정문제는 미 정부가 후원한 반도체 공동 프로그램인 세마테크와 EC의 반도체 프로젝트인 Jessi와 협력관계 증대여부임.

EC의 Jessi 프로젝트는 정부 보조 약 3억 1,500만불을 지원받고 있으며 세마테크와 경쟁을 벌이기 위해 개시된 것임.

그러나 현재 EC는 IBM社의 Jessi 참여 허용을 제안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Philips社와 같은 EC 칩 제조업체들의 세마테크 참여를 허용

할 것으로 보임.

### 4. 議會內에서 外國人 投資 規制 움직임

美 議會 8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夏期 휴회. 남은 會期로 보아 議會는 豫算이나 이라크事態와 같은 非通商部門의 事案을 주로 다룰 것으로 보임. 다만 議會內에서 外國人 投資를 規制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

外國人 投資 規制 側面에 있는 계류중인 法案은 아래와 같음.

- 選舉 資金 志願 法案 改正 : 50% 以上 外國人 持分 所有會社의 政治活動 委員會 參與 禁止. (로이드 벤슨 上院 財務 委員長 提案하여, 上院 통과)

- 製造 및 R&D 部門의 合作 投資業體에 대한 Antitrust law 適用 면제 범위 축소 : 30% 以上の 外國人 所有企業은 면제되지 않음.

- "國家產業基盤"에 威脅을 주는 外國人 投資 禁止 法案 : Doug Walgren (民 : 펜실베니아) 議員 提案. (現在 美 政府는 國家安保에 威脅을 주는 外國人 投資를 禁止할 수 있음.)

- 外國企業 美國內 投資關聯 情報의 公開 義務化(美國企業適用 除外) : 존 브라이언트 下院 議員(民 : 텍사스) 재 입법화 추진. 이 案은 88 綜合貿易法案에 包含되었으나 大統領의 拒否權 우려 最終段階에서 削除된 바 있음.

- IRS (Internal Revenue Service)는 母企業으로부터 구입한 상품과 서비스의 Invoice를 부풀려 稅金 賦課를 회피하였다는 혐의가 있는 외국기업을 調査하고 있음.

이 調査는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 TV, 오디오, VCR, FAX 등을 生産하고 있는 36個의 外國企業의 美國 대기업과 자회사가 포함되어 있음.

議會內 이러한 분위기가 어떻게 發展할지는 불확실함. 한편으로, 탈세문제는 美國 國民들이 더욱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美國의 經濟 沈滯가 長期化될 경우 "정치적 폭발물"이 될

지가 크며 이것은 또한 大統領 選舉의 해가  
가움에 따라 이슈가 될 可能性이 큼.

다른 한편 行政府는 外國人 投資를 差別하거  
· 禁止하는 어떠한 方案에도 反對하고 있으며  
· 部分의 責任 있는 관측통들은 外國人 投資가  
· 수적이지는 않으나 美國 經濟에 중요한 役割  
· 하고 있다고 認識하고 있음.

外國人 投資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상당  
· 분 잘못 인식되어 있음. 예를 들어 美國內  
· 模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확실하게 자리잡고  
· 있는 企業은 캐나다와 유럽계통 會社임(화란의  
· hell Oil, 캐나다의 버저킹, 시그램 등).

### 5. EC, 한국산 반도체 反덤핑 제소

EC 집행위는 한국산 DRAM 반도체에 대한  
· 反덤핑 제소장 사본을 EC 각 회원국에 송부 건  
· 事를 구하고 있는데 하기 휴가철로 인해 9월  
· 1순에 가서야 이를 취합할 수 있을 것 같음.  
· 집행위와 각 회원국 정부간의 일단 협의가 이  
· 루어지면 집행위는 제소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  
· 11 되는데 조사종결 이전에 가격인상 제의가  
· 수락되기는 어려울 것임.

영국 정부는 제소와 관련 입장을 정립하지  
· 않고 있는데 영국 정부나 기타 EC 회원국들은  
· 조사개시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음.

### 6. EC, 일본산 DRAM에 反덤핑 조사 종 · 결

EC 집행위는 일본산 DRAM에 대해 反덤핑  
· 조사를 종결하였는데 최저가격을 준수키로 Un  
·dertaking을 제외한 11개의 반도체 업체들을  
· 제외한 기타 업체에 대해서는 60%의 확정 덤핑  
· 관세가 부과됨.

높은 반덤핑 관세는 집행위가 조사기간중 발  
· 현한 높은 덤핑마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 조사 대상 기간에 EC의 DREM 가격이 최저수

준에 있었음.

### 7. 佛, CTV와 Radio의 간접수입규제

EC 집행위는 프랑스가 CTV와 Radio의 EC  
· 역내의 다른 회원국들을 통한 간접 수입을 규  
· 제하도록 허용함.

#### ① CTV 수상기

○ 대상세번 : CN Code 8528  
10 40, 10 50, 10 61, 10 69, 10 71, 10 73,  
10 79, 10 80, 10 91, 10 98

○ 원 산 지 : 일본, 한국

#### ② Radio 수신기

○ 대상세번 : CN Code 8527 21 10, 21 90,  
29 00

○ 원 산 지 : 일본, 중국, 한국

### 8. GATT 反덤핑 法

GATT 사무국이 제의한 반덤핑 법 개정을  
· 위한 타협안 초안은 수락될 수 없는 것으로 광  
· 범히 비난의 대상이 됨.

특히 일본은 同 타협안이 미국의 우회 방지  
· 조치 제안을 너무 많이 채택하였고 일본과 기  
· 타 국가들의 反덤핑 규제조치의 남용을 방지키  
· 위한 제안들이 너무적게 채택되었다고 비난.  
· 한편 미국의 일부 이해단체들은 현재 그들이  
· 즐기고 있는 보호조치를 제한하려는 反덤핑 법  
· 개정안들의 어느것도 수락할 수 없음을 시사.

타협에 기초한 합의 초안이 90. 7월말 이전에  
· 완성되기를 희망하였으나 GATT 사무국은 타  
· 협안을 수정하여 합의 초안이 89월말에 제시될  
· 전망임.

### 9. 후지쯔社, 영국의 ICL社 인수 의향

일본의 후지쯔社는 영국의 컴퓨터 제조업체  
· 인 ICL(9억~15억 파운드로 평가)의 주식 대  
· 부분의 인수를 의도하고 있다고 발표.

금년초 미쯔비시社는 영국의 PC 제조업체인 Apricot의 제조부문을 매입하였음.

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EC 컴퓨터 산업에 대한 주요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영국 정부에 이를 저지토록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음.

상기 주식인수가 성사될 경우 다른 유럽 업체들이 Esprit와 Race 같은 EC가 주관하는 공동 연구 프로그램에서의 ICL의 향후 역할 문제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음.

### 10. EC 합병 규정

대규모 합병을 규제키 위한 새로운 EC 규정 등이 90.9.21 발효되는데 새로운 규정하에서 EC 집행위는 'EC 차원의 합병'을 감독할 권한을 갖게됨.

관련 당사자들의 세계적인 매출액을 합쳐 50억 ECU 이상이고 당사자들 중 최소한 두 당사자가 EC에서 2.5억 ECU 이상의 매출액을 갖고 있는 경우의 합병이 여기에 해당됨.

집행위의 합병에 대한 감독은 경쟁에 주는 효과에 집중케 될 것임. 동 규정의 발효에 앞서 집행위는 합병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절차상의 규정들을 마련하였고 동 규정을 해석하는 지침들이 8월중 판보에 발표될 예정임.

집행위는 이에 추가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승인을 받기 위한 사전 합병 통보 서식도 확정하였고 통보의 심사를 다룰 전담반이 구성되었음.

### 11. EC 뉴스 단신

① EC는 EC법의 EC 회원국들의 국내법로의 실행에 대한 최근의 조사를 발표. EC 지침(directive)의 거의 90%가 시의에 맞게 각의 국내법으로 실행되고 있음.

EC는 여태까지 회원국들의 EC 규정 실행 너무나도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이것이 단장의 성공적인 완성에 주요 불확실한 요인 하나로 인식되어 우려를 표명하였었음.

② EC와 EFTA(유럽 자유무역연합) 협대표들은 유럽 경제구역(EES) 설립을 목표로 한 첫회의 회담을 종결한바 제반 EC 규정으로부터 면제하여 달라는 EFTA의 요청으로 인해 많은 차이점이 남아 있음.

EFTA는 관세동맹을 추후로 미루면서 자유무역지대의 개선을 추구하고 있음.

③ 오스트리아의 자국의 EC 가입 신청을 신속히 토의하여 달라는 요청이 거부됨. EC는 992년 프로그램하에 역내 무역장애들이 제거될 때 까지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

④ 헝가리 수상은 헝가리가 1995년까지 EC에 가입을 원한다고 언급.

⑤ 유럽의 주요 정보기술(IT) 업체 지도자들은 IT를 위한 EC 전략을 채택토록 집행위를 설득 중에 있는데 이것은 1992년 이후 EC가 미국·일본과 효과적으로 경쟁키 위해 필요하다는 것임.

